

참고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

- (목적) 고령,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·가사활동 등을 지원, 노후생활 안정 및 가족 부담 완화

*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.4.27 제정, 2007.10.1. 시행 (제도시행 2008.7.1.)

- (대상)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질환 등)을 가진 자로서 6개월 이상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

- (급여)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*

(‘24년 기준)

구분	내 용	기관 수
재가급여	가정에 머물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(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, 주야간보호, 복지용구) ※ 평택 시설 190개, 방문요양 136개	22,675개소
시설급여	노인요양시설,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	6,310개소
계		28,985개소

* 도서·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등에 대한 가족요양비

- (인정자 및 이용자 현황) 인정자 128.3만 명, 이용자 93.5만 명

○ 전체 노인인구 993.8만 명 중 약 12.9%인 128.3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

(단위: 명, '24년 기준)

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자치원등급
1,282,8781	54,519	98,989	307,216	527,096	132,393	27,256
(100%)	(4.2)	(7.7)	(23.9)	(41.1)	(10.3)	(2.1)

□ (등급 구성)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제 공 급 여	재가+시설		재가*			주·야간보호
	치매가족휴가제 (종일방문요양)					
	치매가족휴가제(단기보호), 복지용구(재가급여 이용 시)					

* 시설급여 예외적 허용 :

- ① 동일세대의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
- 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
- ③ 심신상태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